

# 등록규제 정비 지침

- ◆ 행정규제는 행정기관(행정규제의 주체)이 국민(행정규제의 객체)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(행정규제의 내용) 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(행정규제의 형식) 된 사항
  - ➔ 행정규제의 주체, 객체, 내용, 형식에 모두 해당할 때 행정규제로 판단

- 1 조례에는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을 근거조항으로 등록
- 2 허가처분 이후 별도로 이루어지는 변경, 연장, 갱신허가 등은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별개의 규제이나,
  - 행정처분이 계속적으로 유효한 범위내에서 요건에 대한 재검토 없이 변동사항을 단순히 연장, 갱신허가 등의 형식으로 정리 하는 것이라면 별개단위의 행정규제가 아니므로 통합등재
- 3 상위법 단순이기 및 나열한 경우는 등록규제로 관리하지 않음
- 4 상위법령의 제·개정 사항 반영
- 5 등록규제의 상위법 근거조항 등을 정확히 기재
- 6 등록규제의 자치법규 명칭, 조, 항 등을 정확히 기재
- 7 자치법규 근거와 부문별 구분은 일치하게 기재
  - 수입증지조례 → 재정경제
  -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→ 주택건축도로
  - 분뇨처리등에관한조례 → 국토도시개발
  -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 → 환경
  -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→ 수자원
  -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→ 건설
- 8 유형과 관련 세부유형은 일치하게 기재
  - 유형 1호
    - 허가, 인가, 특허, 면허, 승인(승락), 지정, 인정(인증, 공인), 시험(심사), 검사, 검정(검인), 확인, 증명, 추천, 동의(협의)

○ 유형 2호

→ 결정(면제, 공제, 해제, 말소 등), 명령(시정, 개선조치 등), 지도(감독, 권고), 단속(조사, 검열, 검색, 진단), 등록말소, 행정질서벌(영업정지, 취소, 과태료부과 등)

○ 유형 3호

→ 신고의무, 보고의무, 등록의무, 고용의무, 통지의무, 제출의무,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(기준고시, 공시, 공고), 금지(부작위) 등

○ 유형 4호 → 기타

9] 규제폐지 등 용어정의를 이해하고 적정하게 실적 분류

○ 규제증가 (사유)

- \* 신설 : 조례 제정으로 신설, 조례 조문 개정으로 신설, 상위법령 제(개)정과 연계하여 관련 조항 제(개)정으로 신설 등
- \* 누락등록 : 하반기 규제정비시 발굴 등
- \* 기타증가 : 하반기 기준수치와 불일치로 조정 등(평가에서 제외)

○ 규제감소 (사유)

- \* 폐지 : 조례 관련조항 삭제로 폐지, 0월 0일 자체 규제정비시 폐지, 비규제로 인해 등록에서 삭제, 상위법령을 단순이기 하여 등록에서 삭제, 유사규제 통폐합으로 관련 규제 폐지, 상위법령이 삭제(또는 변경)되어 해당조례의 관련조항 폐지 등
- \* 기타감소 : 같은 규제를 이중(중복)으로 등록하여 이를 정리한 경우(평가에서 제외)

10] 규제완화의 경우에 관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

- \* 예시) 당초 용적률 30% → 50%로 상향 조정

11] 규제사무명은 가급적 조문제목과 일치

- \* 조문제목과 일치가 불가능할 경우 규제내용을 숙지하여 적합한 사무명 작성